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방법 및 계약기간)

①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자녀)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으로 본다.

⑤계약기간의 자동연장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⑥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⑦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나. 이용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마. 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제3조(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원)

등급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8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방문요양 시 1회당 급여비용(원)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름.

- 기초수급자 : 0%
- 차상위계층 :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
- 일반수급자 : 15%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사랑손요양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